

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총 3 쪽 / 사진 없음	
배포일시	2022. 2. 28.(월)	담당부서	법무부 체류관리과
담당과장	체류관리과장 이승현(02-2110-4055)	담당자	사무관 박창두(02-2110-4059)

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

- 법무부(장관 박범계)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이번 조치는 장·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,843명(22.1.31. 현재)을 대상으로 하며,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(합법체류 중인 사람)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*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·취업 허용
 - * 졸업,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,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
 - ※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
 - (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)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,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

-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.

[붙임] : 우크라이나인 체류 현황 1부.

□ 체류자격별

총계	방문동거 (F-1)	단기방문 (C-3)	결혼이민 (F-6)	유학 (D-2)	어학연수 (D-4)	기타
3,843	812	174	153	103	80	2,521

※ '22년 6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538명 / 동포 2,390(H2, F4, F1)